

1999. 12. 22

제91회 정기회

검 토 보 고 서

사회도시위원회

(보고자 : 전문위원 박화순)

광주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

■ 제안이유

- 공중화장실 시설의 개선명령 및 과태료의 부과 등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조항을 행정규제 개혁 차원에서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.

■ 주요골자

- 공중화장실 시설의 설치기준, 유지·관리 및 개선명령 규정을 폐지함.
- 유료화장실의 승인,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을 폐지함.

■ 검토보고

- 본 폐지조례안은 행정규제 개혁 차원에서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및 상위법과 중복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
-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는 상위법인 오수·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규정에 구청장이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 이를 위생적으로 유지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 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